

의안번호	제 655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회)

##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7년 8월 21일

#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

의 안  
번 호 655

제출연월일 : 2017년 8월 21일  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## 1. 제안사유

- '99년 1월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체결 이후 5개 시·도가 매년 윤번제로 간사를 맡아 관광협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상품 개발·홍보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상호협력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
- 이에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의 지위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행정협의회 구성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개요

- 구 성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
- 목 적 : 관광상품 공동 개발·홍보를 통한 지역관광 진흥 도모
- 운 영 : 5개 시·도가 윤번제로 사업 주관
- 재 원 : 사업예산(각 시·도별 균등분담) 및 전년도 이월금

### 나. 주요사업

- 수도권 5개 시·도 연계 관광상품 및 홍보 콘텐츠 개발
- 지방자치단체별 각종 축제, 행사 참여 등 관광분야 교류
- 개발 관광상품의 국내·외 홍보 및 판촉활동
- 지방자치단체별 관광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등

#### **다. 협의회 지위 유지 필요성**

- 수도권의 균형 있는 관광산업 발전 및 국제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공동 관광상품 개발과 꾸준한 홍보·마케팅이 필요하며
- 5개 시·도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·운영을 통해 공동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수도권 관광 진흥 협의회의 지위 유지가 요구됨

#### **3. 의안전문 : 불임**

#### **4. 관계법령 발췌 : 불임**

#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 운영 규약안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약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, 외국인관광객 증가추세, 주5일제 근무 등 관광여건 변화에 따른 수도권 관광 진흥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본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
2. 인천광역시
3. 경기도
4. 강원도
5. 충청북도

**제3조(사업 추진)** 본 협의회의 사업은 5개시도가 윤번제로 사업을 추진한다.

**제4조(처리사무)** 본 협의회는 구성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협의 한다.

1. 관광상품의 지역 연계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
2. 지방자치단체별 각종 축제·행사 참여 등 교류활동 전개
3. 수도권 5개 시·도 관광상품의 국내·외 홍보를 위한 판촉활동에 대한 사항
4. 지방자치 단체별 관광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대한 사항
5. 그 밖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**제5조(조직)**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관광담당국장, 인천광역시 관광담당국장, 경기도 관광담당국장, 강원도 관광담당국장 및 충청북도 관광담당국장으로 한다.

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괄 간사 1명을 둔다.

④ 간사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담당과장이 되며, 회의 운영의 기록관리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.

**제6조(의장)** ① 본 협의회 회장은 서울특별시 관광담당국장, 인천광역시 관광담당국장, 경기도 관광담당국장, 강원도 관광담당국장 및 충청북도 관광담당국장 순의 윤번제로 한다.

-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- ③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④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.

- 제7조(회의개최)**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회의는 연1회 매년 상반기중에 개최한다.
  - 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며, 협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참석대상으로 한다.
  -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하며, 회의 개최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- ⑤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 결과를 관계 위원과 각 시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협의결과 처리)** 본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.

**제9조(협의사항의 조정)**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- 제10조(협의방법)**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개최를 요구한 위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.
- ② 협의안건 의결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하며, 위원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대리인에게 토의·표결 권한을 부여한다.

**제11조(실무협의회)**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- ② 실무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관광담당 과장과 안건관련 과장을 위원으로 하며,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안건 중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실무협의회

에서 처리할 수 있다.

④회장이 속하였거나 회의를 소집한 위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업무담당 과장이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된다.

**제12조(경비부담 및 집행)**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“수도권 관광진 흥 공동사업”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·도에서 부담할 수 있다.

②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 경비 집행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.

**제13조(사무인계인수)** 회장은 임기만료 1개월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규약개정)** 회원 전원이 필요로 하여 찬성하면 본 규약을 제정(개정) 할 수 있다.

**제15조(보칙)**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따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 계 법 령 (발췌)

### □ 지방자치법

- 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- 제153조(협의회의 조직)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.
-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- 제154조(협의회의 규약)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협의회의 명칭
2.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
3.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
4.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
5.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
6.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155조(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)**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, 의견 개진,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**제156조(협의사항의 조정)**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(調整) 요청을 하면 시·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, 시·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·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되는 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.

**제157조(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)**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.

**제158조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**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